

#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검 토 보 고

##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2121
- 발 의 자 : 홍성룡 의원 외 25명
- 발 의 일 : 2021년 2월 1일
- 회 부 일 : 2021년 2월 9일

## 2. 제안이유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자부심을 고취하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은 물론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 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가. “입영”, “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대해 정의함(안 제2조).
- 나. 입영지원금의 지급대상 및 신청·지급절차에 대해 규정함(안 제3조 ~안 제5조).
- 다. 입영지원금의 환수조치에 대해 규정함(안 제6조).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규 : 「병역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조

### I. 비용추계 요약

####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에 따라 비용 발생

#### 2. 비용추계의 전제

##### 가. 대상

-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 비용

##### 나. 전제

-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의 수, 19~25세 남성인구 수는 통계청 및 e-나라지표(국정 모니터링지표) 자료를 참고
- 서울시 현역병의 수는 최근 5년간 현역병 수 증감률의 평균값( $\Delta 4.1\%$ )만큼 매년 감소한다고 가정
- 서울시 사회복무요원의 수는 최근 5년간 사회복무요원 수 증감률의 평균값( $4.3\%$ )만큼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

※ 최근 5년간 서울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복무) 현황

(단위 : 명, %)

연번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의 평균	
1	현역병 수	계	44,785	42,544	38,964	37,399	37,860	$\Delta 4.1$
		징집	24,487	22,439	21,543	19,630	20,389	
		모집	20,298	20,105	17,421	17,769	17,471	
	(증감률)	-	( $\Delta 5.0$ )	( $\Delta 8.4$ )	( $\Delta 4.0$ )	(1.2)		
2	사회복무요원 수	10,309	10,958	12,313	12,396	12,121	4.3	
	(증감률)	-	(6.3)	(12.4)	(0.7)	( $\Delta 2.2$ )		

자료 : 현역병 입영현황(e-나라지표) 및 사회복무요원 복무현황(통계청)

- 서울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수 산출 시, 매년 서울시 19~25세 남성인구 감소율을 반영하여 추계
  - 서울시 19~25세 남성인구 감소율( $\Delta 2.9\%$ ) : 최근 5년간 감소율의 평균(통계청)
- 입영지원금은 제4조(지급대상)에 따라 서울시 총전입이동률( $16.6\%$ )만큼 제외하고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
  - ※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한다.

※ 서울 총전입 이동률(16.6%) : 2020.1~11월 서울시 총전입 이동률의 평균(통계청, 국내인구이동통계 자료)

○ 입영지원금은 100천원, 1회 지급하는 것으로 전제하여 추계

다. 추계기간

○ 5년(비용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이 예상됨)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18,511,100천원(연평균 3,702,22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 연도		연도					합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입영지원금 (제3조)	3,885,200	3,770,400	3,707,000	3,601,500	3,547,000	18,511,100
	소계(b)	3,885,200	3,770,400	3,707,000	3,601,500	3,547,000	18,511,100
□ 총 비용(b-a)		3,885,200	3,770,400	3,707,000	3,601,500	3,547,000	18,511,100

다. 입법예고(2021. 2. 16. ~ 2. 23.) 결과 : 의견 없음.

## 5. 검토의견

### 가. 제정안의 입법취지 및 필요성 검토

- 본 제정조례안은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려는 것임.
- 본 제정안은 7개 조문,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의, 입영지원금 지급규모·지급대상·신청 및 환수 등에 사항을 명시하고, 부칙에서는 시행일을 규정하고 있음.

#### <조문체계 및 주요 내용>

조문체계	주요 내용
제1조(목적)	-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과 동시에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제2조(정의)	-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음. 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함. 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함. 3. “사회복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함.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 서울특별시장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고,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함. - 입영지원금은 10만원 이내로 함.
제4조(지급대상)	-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으로 함.

제5조(신청 및 지급)	-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함. -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함. -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제6조(환수조치)	-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함.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함.
부칙	- 공포일부터 시행

○ 본 조례안에 대한 비용 추계내역을 살펴보면, 서울시 사회복지무요원의 수는 최근 5년간 사회복지무요원 증감률의 평균값(4.3%)만큼 매년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 현역병과 사회복지무요원의 입영 대상자 수는 매년 서울시 19~25세 남성 인구 감소율(△2.9%, 최근 5년간 감소율, 통계청 자료)을 반영하며,

< 최근 5년간 서울시 현역병 및 사회복지무요원 입영(복무) 현황 > (단위 : 명, %)

연번	구분	2015	2016	2017	2018	2019	증감률의 평균	
1	현역병 수	계	44,785	42,544	38,964	37,399	37,860	△4.1
		징집	24,487	22,439	21,543	19,630	20,389	
		모집	20,298	20,105	17,421	17,769	17,471	
	(증감률)	-	(△5.0)	(△8.4)	(△4.0)	(1.2)		
2	사회복지무요원 수	10,309	10,958	12,313	12,396	12,121	4.3	
	(증감률)	-	(6.3)	(12.4)	(0.7)	(△2.2)		

※ 현역병 입영현황(e-나라지표) 및 사회복지무요원 복무현황(통계청)

- 거주기간 1년이상 요건에 대하여는 서울시 총 전입이동률(16.6%)만큼 제외하는 것으로 추산하여 금년의 경우 약 38억 8천 5백만원의 예산 투입이 필요할 것으로 추계하고 있음.

※ 총 비용 ≙ 5년간 18,511,100천원(연평균 3,702,220천원)

**< 비용추계 결과 >**

(단위 : 천원)

연도		1차년도 (2021)	2차년도 (2022)	3차년도 (2023)	4차년도 (2024)	5차년도 (2025)	합계
세입	-	-	-	-	-	-	-
	소계(a)	-	-	-	-	-	-
세출	입영지원금 (제3조)	3,885,200	3,770,400	3,707,000	3,601,500	3,547,000	18,511,100
	소계(b)	3,885,200	3,770,400	3,707,000	3,601,500	3,547,000	18,511,100
□ 총 비용(b-a)		<b>3,885,200</b>	<b>3,770,400</b>	<b>3,707,000</b>	<b>3,601,500</b>	<b>3,547,000</b>	<b>18,511,100</b>

- 비상기획관은 병역이행자의 자부심을 고취하고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동 조례의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나,
  -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입영자에게 교통비, 식비, 숙박비 등 “병역의무자 여비”를 지급하고 있는바 본 입영지원금과 성격상 중복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고,
  - 본 입영지원금이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한정되어 지급할 경우 전환·대체 복무자(별첨 참고자료)와의 형평성 논란이 있을 수 있으며,

**병무청 병역의무자 여비 개요**

지급대상	여비 수령방법
병역판정검사자 (육군 모집병신체검사자 포함)	병역판정검사 당일 검사장에서 발급되는 "나라사랑카드"를 통해 여비수령 단, "나라사랑카드" 발급을 원하지 않는 사람은 본인이 원하는 개인금융계좌로 여비수령
현역병(상근예비역)입영자, 사회복무요원, 대체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산업기능요원, 공중보건기사, 병역판정전담의사, 공익법무관 입영자	입영일 30일전부터 입영 당일까지 입영통지서에 첨부된 여비지급통지서를 가까운 우체국에 제출하여 여비 수령 다만, 입영통지서를 e-mail로 받은 사람의 입영여비는 입영 후 5일 이내에 나라사랑계좌 또는 개인금융계좌로 입금됨
육군모집병 입영자, 모집전형 참석자	인터넷 지원시 입력한 개인 금융계좌로 입영(전형) 후 5일 이내(최종합격자 발표일까지) 여비 수령 단, "나라사랑카드" 발급자는 카드를 통해 여비수령, 모집전형 참석자 여비는 응시횟수 통틀어 1회만 지급
병력동원 훈련소집 입영자	훈련입소후 입영부대에서 퇴소여비와 함께 지급(계좌 입금) 동원훈련 입소시 본인계좌 지참 입소

※ 병무청 누리집 병역이행 안내 참조

- 병무청과의 병역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연계시스템 구축과 입영연기자에 대한 지원금 환수 등을 위한 주민등록 정보 접근 권한 등 행정체제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뿐 아니라,
- 그 외에도 입영지원금 지급 효과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종합적인 검토를 위해 본 조례안에 대한 보류 의견을 제시하고 있음.
- 본 제정안은 서울시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으로써 입영자들의 자부심을 고취하여 「헌법」 제39조의 국민의 의무<sup>1)</sup>인 국방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데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다음의 사항을 고려한 신중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첫째, 「지방자치법」 제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 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동법 제11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가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고 규정하면서 “국방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물가정책 등전국적으로 통일적 처리를 요하는 사무” 등을 명시하고 있음.
- 군복무와 관련한 법령으로 「병역법」, 「군인복지기본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 수십 개의 법령이 있고, 국방과 관련하여 법률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규정이 없는 상황이며,
- 병무청에서 병역의무 입영자에게 “병역의무자 여비” 제도를 이미 실시하여 국가에서 선점하고 있는 정책 분야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라는 명확한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동 사업을 수행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살펴 볼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1)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

○ 다만, 법률자문 결과를 살펴보면,

- 본 사업은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국방 사무 또는 전국적 기준의 통일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바,
- 본 입영지원금 지급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여 「지방재정법」 제17조에 따라 본 조례안과 같이 지출근거를 규정하여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이 주된 의견(3/3)임.

○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둘째, 병역의무 대상자 중 현역병,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 한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것이 차별성이 존재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를 살펴보면,

- 본 입영지원금 대상을 제한하는 것은 신체 건강한 입영대상자와 심신장애 등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없거나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군법무관, 군의관 등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람들을 차별하고 있는바 본 조례안은 평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 될 수 있다는 의견(1/3)과,
- 입영대상자는 다른 형태의 병역의무 이행자에 비해 기회비용 등의 상실로 말미암은 손해를 보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전책으로 본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할 것인바, 이는 헌법에서 허용하는 합리적인 차별이라는 의견(2/3)도 있음.

- 따라서, 병역의무는 서울시 병역의무 이행 대상자들에게만 한정되는 사업이 아닌바, 지방자치단체별로 경쟁적으로 입영지원금 지급 제도를 도입<sup>2)</sup>할 것이 아니라 지원 대상 확대와 국가에서 통일적으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 필요성도 있다고 하겠음.
- 셋째, 본 입영지원금 제도가 「사회보장기본법」(제26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대상인지에 대한 법률자문 결과에서는,
  - 본 조례안에 따른 입영지원금 지급이 사회보장사업을 신설하는 것에 해당하여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는 의견(3/3)을 제시하고 있음.

○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보장”이란 출산, 양육, 실업, 노령, 장애, 질병, 빈곤 및 사망 등의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모든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필요한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서비스를 말한다.
2. “사회보험”이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의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국민의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3. “공공부조”(公共扶助)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4. “사회서비스”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5.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주기에 걸쳐 보편적으로 충족되어야 하는 기본욕구와 특정한 사회위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특수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서비스를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말한다.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2) 2020.11.12. 경기도 구리시에서 최초로 현역병,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을 대상으로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제정한 이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입법을 준비하고 있는 상태임.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 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 따라서, 본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상 협의 대상 사업에 해당 될 수 있는바, 보건복지부 협의를 진행하여 필요절차 이행 후 제도를 시행함으로써 조례의 완결성을 제고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입법.법률 자문 결과(입영지원금 지급) >**

자문 요지 : 지방자치단체가 병역의무 대상자 중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소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조례 제정이 가능한지			
구분	자문1	자문2	자문3
질의1 「지방자치법」 상 국가사무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무 인지 여부	적정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	적정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	적정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해당
질의2 「지방재정법」 상 공금 지출 제한 대상인지 여부	적정 공금지출 제한 대상 아님.	적정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적정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
질의3 「사회보장기본법」 상 보건복지부 사전 협의 대상인지 여부	부적정 사회보장사업에 대하여 협의 대상	부적정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	부적정 사회서비스에 대하여 사전 협의 대상
질의4 병역의무자 중 일부만 지원하는 것이 차별성이 있는지 여부	부적정 평등의 원칙 위배 가능성 큼.	적정 입법 재량으로 헌법 상 합리적인 차별로 보임.	적정 비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여 위법하지 않음.

- 한편, 서울특별시의 2020회계연도 재정자립도는 77.9%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비하면 높은 편이나 지속 하향하고 있고, 서울특별시의 사회보장 예산 비율은 36.8%로 지속 증가하는 추세에 있는 상황으로,

**<2020년도 서울시 당초예산기준 재정자립도>** (단위 : 백만원, %)

재정자립도 (B/A)	세입 합계 (A=B+C+D+E)	자체세입 (B)	이전재원 (C)	지방채 (D)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E)
77.88%	25,359,104	19,749,756	5,191,710	29,500	388,137

- ▶ 일반회계기준
  - \* 2014년 세입과목 개편으로 잉여금, 이월금, 전입금, 예탁·예수금 등이 세외수입에서 제외
- ▶ 자체세입 : 지방세(지방교육세 제외) + 세외수입
- ▶ 이전재원 : 지방교부세 + 조정교부금 등 + 보조금

**<서울특별시 재정자립도 연도별 현황>** (단위 : %)

2016	2017	2018	2019	2020
80.70%	81.31%	80.61%	78.45%	77.88%

**< 사회보장예산 점유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사회보장예산 비율		
		전체예산(a)	사회복지 예산(b)	사회복지 예산비율 (b/a*100)
77.88	78.68	24,168,334	9,902,429	36.8

- ※ 재정자립도 :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
- ※ 재정자주도 : 전체 세입에서 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하고 집행할 수 있는 재원의 비율

**< 세출분야별·연도별 현황(일반회계 기준)>** (단위 : 백만원, %)

세출분야	2016		2017		2018		2019		2020	
	금액	비중								
<b>합 계</b>	19,169,409	100%	20,639,809	100%	22,466,451	100%	24,168,334	100%	26,893,391	100%
일반공공행정	4,432,978	23.13%	4,878,795	23.64%	5,317,981	23.67%	5,473,827	22.65%	6,355,382	23.63%
공공질서 및 안전	747,960	3.90%	775,886	3.76%	844,999	3.76%	874,049	3.62%	1,043,889	3.88%
교육	2,742,917	14.31%	3,083,399	14.94%	3,254,720	14.49%	3,335,532	13.80%	3,683,963	13.70%
문화 및 관광	515,708	2.69%	579,086	2.81%	579,567	2.58%	645,942	2.67%	634,719	2.36%
환경 보호	397,883	2.08%	472,919	2.29%	549,885	2.45%	693,152	2.87%	898,479	3.34%
<b>사회 복지</b>	6,551,914	34.18%	6,939,331	33.62%	7,660,112	34.10%	8,881,568	36.75%	9,902,429	36.82%
보건	385,120	2.01%	414,387	2.01%	452,760	2.02%	455,516	1.88%	479,331	1.78%

농림해양수산	16,631	0.09%	22,793	0.11%	16,488	0.07%	27,472	0.11%	31,222	0.12%
산업·중소기업	218,665	1.14%	203,039	0.98%	227,344	1.01%	284,841	1.18%	439,256	1.63%
수송 및 교통	956,950	4.99%	907,888	4.40%	987,819	4.40%	746,444	3.09%	707,312	2.63%
국토 및 지역개발	1,254,899	6.55%	1,349,523	6.54%	1,489,209	6.63%	1,635,821	6.77%	1,631,326	6.07%
과학기술	1,599	0.01%	2,220	0.01%	4,784	0.02%	2,993	0.01%	2,074	0.01%
예비비	151,017	0.79%	175,502	0.85%	196,825	0.88%	211,521	0.88%	129,397	0.48%
기타	795,167	4.15%	835,042	4.05%	883,960	3.93%	899,656	3.72%	954,611	3.55%

▶ 당초예산 총계기준

※ 출처 : 2020년 서울특별시 예산기준 재정공시(2020. 2.), 당초예산, 일반회계 기준  
 - 사회보장예산의 지속적인 증대가 건전재정 및 재정 효율성 차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고려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나. 세부 내용 검토

### 1) 조례의 목적, 정의 등 (안 제1조~안제2조)

- 안 제1조는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지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함으로써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함과 동시에 시민 복리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규정하고 있고,
  - 안 제2조는 ‘입영’, ‘현역병’을 직접 정의하고, ‘사회복지무요원’에 대해서는 「병역법」의 정의(제2조제1항제10호) 규정을 인용하고 있으나, ‘입영’에 대한 정의 규정안은 법률의 정의를 조례에 그대로 반복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제정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li> <li>2. “현역병”이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을 말한다.</li> <li>3. “사회복지무요원”이란 「병역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li> </ol>

## < 병역법 >

제2조(정의 등) ①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2. (생략)

3. “입영”이란 병역의무자가 징집(徵集)·소집(召集) 또는 지원(志願)에 의하여 군부대에 들어가는 것을 말한다.

4. ~9. (생략)

10. “사회복무요원”(社會服務要員)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국가기관

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단체(公共團體)

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설치된 사회복지시설(이하 “사회복지시설”이라 한다)

10의2. (이하 생략)

제5조(병역의 종류) ① 병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현역: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징집이나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兵)

나. 이 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현역으로 임용 또는 선발된 장교(將校)·준사관(準士官)·부사관(副士官) 및 군간부후보생

2. (이하 생략)

- 인용 법령 조문이 개정될 경우 불필요하게 조례의 개정 또한 동반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 제2조제3호의 경우와 같이 근거 법령의 조항을 직접 인용하는 것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검토의 여지가 있다고 하겠음.

### 2) 입영지원금 규모, 지급대상, 운영, 시행규칙 등 (안 제3조~안 제7조

- 안 제3조는 입영지원금을 1회에 한하여 10만원 이내에서, 안 제4조는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한하여 지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앞에서 본 바와 같이 병역의무 이행자 중 현역병과 사회복무요원에 한정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보충역 등 대체복무 종류 및 근거 규정>**

○ **병역의 종류 (병역법 제5조)**

현역	징집 또는 지원에 의하여 입영한 병과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의하여 현역으로 임용된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군간부후보생
예비역	현역을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예비역에 편입된 사람
보충역	병역판정검사를 받아 현역복무를 할 수 있다고 판정된 사람중에서 병력수급사정에 의하여 현역입영대상자로 결정되지 아니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산업기능요원 등으로 복무 또는 의무복무 하고 있거나, 그 복무 또는 의무복무를 마친 사람, 기타 병역법에 의하여 보충역에 편입된 사람
대체역	병역의무자 중 「대한민국헌법」 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또는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하여 병역을 이행하고 있거나 이행할 의무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대체역에 편입된 사람
병역준비역	병역의무자로서 현역, 예비역, 보충역, 전시근로역 및 대체역이 아닌 사람
전시근로역	병역판정검사 또는 신체검사결과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는 할 수 없으나 전시 근로소집에 의한 군사 지원업무는 감당할 수 있다고 결정된 사람, 그 밖에 이 법에 따라 전시근로역에 편입된 사람

○ **대체복무의 종류**

사회복무요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등의 사회서비스업무 및 행정업무 등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공익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환복무	현역병으로 복무 중인 사람이 의무경찰대원 또는 의무소방원의 임무에 복무하도록 군인으로서의 신분을 다른 신분으로 전환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연구요원	학문과 기술의 연구를 위하여 병역법 제36조에 따라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전문 분야의 연구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산업기능요원	산업을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제36조에 따라 산업기능요원으로 편입되어 해당 분야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승선예비역	「선박직원법」 제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항해사 또는 기관사로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또는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에 국민경제에 긴요한 물자와 군수물자를 수송하기 위한 업무 또는 이와 관련된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소집되어 승선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예술체육요원	예술·체육 분야의 특기를 가진 사람으로서 병역법 제33조의7에 따라 편입되어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의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보건 의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중보건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익법무관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률구조업무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의 공공목적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법률사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공중방역수의사	수의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축방역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 안 제5조는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대상자의 신청에 의하여, 대상자 여부 확인 후 지급하되, 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지급 대상자가 아니거나, 부정한 방법에 의해 지급된 입영지원금은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안 제7조는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안의 조문은 입영지원금 지급 제도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지급대상자 지급 기준(입영 통지서 송달, 입영일 등), 지급액, 지역화폐 활용 등 지급 방법, 지급기한, 환수 절차 등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바, 안 제7조에 따른 규칙 제정에 면밀한 대응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제정안
제3조(입영지원금 지급)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제4조의 지급대상에게 시민 복리증진과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기 위하여 입영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영지원금은 1회만 지급한다.
② 입영지원금은 10만원 이내로 한다.
제4조(지급대상) 입영지원금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병역법」에 따라 입영하는 현역 병과 사회복지무요원으로 한다.
제5조(신청 및 지급) ① 입영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소집) 전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지급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입영지원금을 지급한다.
③ 입영지원금 신청 및 지급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환수조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영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지급대상이 아닌 사람에게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에 따라 지급된 경우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3) 기타(부칙)

- 부칙에서는 본 개정조례안의 시행일을 공포한 날로 규정하고 있으나, 비상기획관의 병무청과의 병역정보 연계시스템과 주민등록 정보 접근 권한 마련 등 행정체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 무엇보다 예산 편성을 통한 재원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안 시행일과 적용례에 대한 추가 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 정 안	수 정 의 건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부 칙</p> <p>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u>20◇◇년 ◇◇월 ◇◇일부터 시행한다.</u></p> <p>제2조(지급대상자에 관한 적용례) 제3조 및 제4조의 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입영통지서가 발급된 사람(or 입영통지서를 송달 받은 사람 or 입영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p>

전문위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석 훈
------	-------	-------	-------